

## 피보험이익의 요건과 효과

- 사용승인 기간이 지난 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 시 보험금 지급 여부 -

이성남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검사역

### 1. 머리말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은 1806년 Lucena v. Craufurd에서 로렌스 판사가 “물건의 멸실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라고 판시한 이후 인정된 개념이다.<sup>1)</sup> 우리나라에서 피보험이익은 주로 손해보험의 중심요소로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보고 보험계약의 대상인 보험의 목적과 구별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핵심요소가 되며 피보험이익이 흠풀려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본 고에서는 손해보험의 중심요소인 피보험이익의 상실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피보험이익에 대한 이론 및 관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사례

甲은 아파트 건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하여 200평의 견본주택을 건축하고 그 내부에 집기 및 시설을 갖춘 후 견본주택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甲, 보험목적의 소유자 甲, 보험기간 '97. 1. 7~'98. 1. 7까지, 보험금액을 견본주택 1억5천만원, 집기 및 시설물 일체 5천만원으로 하는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을 乙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97. 11. 11 견본주택에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견본주택과 그 내부에 비치된 시설물 및 집기비품 일체가 전소되었다. 이에 따라 甲은 乙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보험회사는 甲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견본주택에 대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은 사고 당시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이 경과, 철거될 운명에 처하여 사용가치가 없어졌으므로 甲으로서는 견본주택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甲은 견본주택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상실로 乙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3. 이론적 논의

#### 가. 논의 제기

우리 나라에서는 상법 제668조를 근거로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새기고

1) 양승규, 보험법(제3판) 194면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은 손해보험에서 특유하게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피보험이익을 손해보험에서만 한정하여 인정하고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새기다며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개념설정 별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이점에 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는 일정한 보험사고를 전제로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는 점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라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관한 이익설의 관점을 견지한다면 동 개념을 손해보험에 국한하여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나. 피보험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에 관한 우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고 하는 견해<sup>2)</sup>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보는 견해<sup>3)</sup>로 대립되어 있다. 전자를 관계설, 후자를 이익설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 다. 피보험이익의 지위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로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에 대하여도 학자들간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1) 절대설

피보험이익을 손해보험계약의 불가결한 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즉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박과 다르고, 피보험이익이 적어도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중심요소가 됨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이 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sup>4)</sup>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논리적·내재적 전제조건으로서, 평가 가능한 크기로 현존해야 한다고 하며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며 존속요건이라고 설명하는 견해<sup>5)</sup>를 말한다.

##### (2) 상대설

이 견해는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사행계약으로서 손해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개념<sup>6)</sup>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을 절대적인 척도로 보는 견해는 첫째,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행 시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초과보험에 있

2) 김성태, 전계서 379면,

3) 손주찬, 전계서 565면

4)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2001, 659면

5) 김성태, 전계서 383면

6) 최기원, 전계서 383면

어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이 현저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삼지 않는 점(상법 제669조)과 모순된다. 셋째, 기평가보험(상법 제670조), 신가보험(상법 제676조 1항 단서)의 유효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예외적 현상을 무리없이 설명하려면 상대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sup>7)</sup>를 말한다.

### (3) 사견

생각컨대 보험가액 초과와 신가보험의 문제는 피보험이익의 평가의 문제이며 양의 대소에 관한 문제이므로 직접적으로 피보험이익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이익의 흡결문제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구별되는 보험의 목적물의 불능문제로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돌아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 앞으로 피보험이익의 지위에 관해서는 계약법의 근본원리로 돌아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볼 것인지 손해보험에 특유한 계약성립의 목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라.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해석하는 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요건과 더불어 피보험이익에 특유한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 (1) 이익의 적법성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형벌 또는 행정벌에 의하여 상실될 이익이나 판매가 금지된 화약, 독약, 무기 등의 판매이익, 금지품, 금수품에 대한 이익, 도박, 탈세, 철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계약을 무효로 한다.

### (2) 금전산정 가능성

피보험이익은 경제적인 이익으로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상법 제668조) 반드시 법률상의 권리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제적 이익 외에 정신적 이익은 제외된다.

### (3) 확정 가능성

피보험이익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현준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이익의 종류·귀속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sup>8)</sup> 왜냐하면 확정될 수 없는 이익은 피보험자의 손해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마. 피보험이익의 기능

7) 김성태, 전계서 383-384면

8) 손주찬, 전계서 567면

### **(1) 보험자의 책임범위 한정**

손해보험은 피보험의 이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 최고 한도는 피보험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진다.

### **(2)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기준**

보험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진 피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비교하여 당해 보험이 전부·일부·초과·중복보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결정한다. 이 경우 피보험의 이익은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중복보험은 피보험의 이익이 동일하면서 보험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 **(3) 보험계약의 개별화**

동일한 보험목적에 관해서도 이해관계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부보주체와 보험의 목적의 관계를 표현하는 피보험의 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을 개별화시킨다. 예컨대 건물의 화재에 관하여 소유자 저당권자 임차인의 피보험의 이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기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의 효력판정 기준**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지만 피보험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도박과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피보험의 이익이 험결된 손해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 **바. 피보험의 이익의 유형**

### **(1) 소유권 등 물권**

소유권은 권리 중에 가장 완전한 권리이므로 법적으 소유자의 경우 피보험의 이익이 인정된다. 피보험의 주체는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sup>9)</sup> 기타 선박저당권자, 양도담보권자 등 제한 물권자의 경우에도 피보험의 이익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물권에 준하는 무체재산권도 피보험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계약상 권리 및 이해관계**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 가지는 권리도 피보험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급심 중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피보험의 이익을 인정하는 예도 있다.<sup>10)</sup>

### **(3) 사실상의 이익**

피보험의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므로 적법성이 인정되는 한 반드시 법률상의 이익일 필요는 없다. 미등기 가옥 소유자에게 피보험의 이익을 인정한 외국의 예가 있다.<sup>11)</sup>

### **(4) 사원권**

주주가 회사재산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의 판례는 회사재산에 대한 피보험의 이익을 부인하고 있다<sup>12)</sup>. 주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9) 대법원, 1995.4.28 선고 95다4001판결

10) 서울민지(제14) 1993.2.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판결

11) 김성태, 전계서 390면

12) 김성태, 전계서 389면, Macaura V. Northern Assurance Company Ltd.(1924.H.L) 판결

개별적인 회사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인이익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 피보험인이익 흠풀의 효과

##### (1) 당연무효

피보험인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성립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sup>13)</sup> 다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 무중과실이면 예외이다.<sup>14)</sup>

##### (2) 피보험인이익 흠풀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피보험인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비로소 피보험인이익 흠풀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행법규 위반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신의칙 위반 주장은 허용되며 우리 대법원도 동일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sup>15)</sup>

#### 아. 피보험인이익 흠풀에 관한 입증책임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효력의 무효 주장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sup>16)</sup>

### 4. 판례 및 조정례 고찰

#### 가. 피보험인이익의 적법성 충족 여부

보험분쟁조정위원회(現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군을 통한 불법 유출물에 대하여 피보험인이익의 적법성을 부인한 바 있다.<sup>17)</sup>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이 이따금씩 불법한 복권 도박을 하는 장소로 사용된 경우 이로써 화재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매출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을 화재보험에 부보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사례 등이 있다.<sup>18)</sup> 또한 벌금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책임은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이므로 형사책임의 한 형태인 벌금을 보상하는 것은 이론상 허용될 수 없으며 상금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인이익의 적법성 요건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sup>19)</sup>하는

13) 양승규, 보험법, 197면

14) 김성태, 전계서 390면

15) 대법원 1999.12.7 선고 99다39999판결

16) 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 판결

17) 도난보험분쟁, 78- 1(78.4.10)

18) 김성태, 전계서 381면

19) 김성태, 전계서 381-382면

견해가 있는 바,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 나. 피보험 이의 중복 여부

##### (1) 판례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sup>20)</sup>

##### (2) 조정례

동산종합보험과 리스보증보험의 중복여부에 관하여 보험분쟁조정위원회(現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목적은 물건이고, 리스보증보험의 보험목적은 리스계약에 의한 채권으로 형식적으로는 보험목적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2개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보험에 준하여 보험금을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sup>21)</sup>

#### 다. 피보험 이의 여부

보험계약자가에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수출대금 회수불능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하고 보험금 수취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보험에 붙여진 피보험 이익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즉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보험사고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출물품의 대금채권이 멸손되어 장차 손해를 받을 지위에 있으나 아직 손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될 뿐, 보험금 수취인의 이익은 그 피보험 이익이 아니므로 그 보험계약은 보험금 수취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다.<sup>22)</sup>

#### 라.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 여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sup>23)</sup>

#### 마. 피보험자성 인정 여부

20) 대법원 1997.9.5 선고 95다47398 판결

21)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 '93.10.25 결정, 사건 93-63 동산종합보험분쟁

22)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489 판결

23)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 (1) 판례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sup>24)</sup>

### (2) 조정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관계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sup>25)</sup>
-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상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자를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sup>26)</sup>

## 5. 사례의 해결

피보험이익은 전 보험기간에 걸쳐 갖추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적어도 보험사고 당시에는 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결하면 보험계약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당연무효가 된다.

아파트 견본주택은 아파트 분양의 원활화를 위해 단기간 설치하였다가 아파트 공사 완공 무렵에 철거하게 된다. 아파트 시공자는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견본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는데 이때 견본주택의 준치기간을 함께 승인받는다. 일종 견본주택의 준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목적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철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견본주택의 소유자가 가지는 피보험이익은 상실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 당시 견본주택의 사용승인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인 아파트 분양업무가 종료하지 않은 이상 계약자의 견본주택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이익이 없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이 견본주택의 사용승인기간과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사용승인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견본주택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소멸하였다거나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보험회사는 견본주택의 소실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4) 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25)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 '91.11.4 결정, 사건91-67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분쟁, 책임보험의 피보험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

26)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 '92.8.81 결정, 사건92-45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분쟁,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미리 약관에 규정해 놓고 있음